

**2019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**

2019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7일

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

**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**

가. 기관별 선발예정인원

시험명	시험방법	직급	직 렬	직 류	선 발 예 정 인 원	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
제2회 임 용 시 험	경력 경쟁 임용 시험	계		2개	65명	
		9급	시설	일반토목	51	<b>도 일괄 51</b> (목포 2, 여수 3, 순천 3, 광양 6, 담양 1, 곡성 3, 구례 2, 고흥 2, 보성 6, 화순 4, 장흥 2, 강진 3, 해남 2, 영암 1, 무안 2, 함평 2, 장성 2, 완도 2, 진도 3)
				건 축	14	<b>도 일괄 14</b> (목포 1, 순천 3, 광양 1, 구례 1, 고흥 1, 보성 2, 강진 1, 해남 1, 무안 2, 완도 1)

※ ‘도일괄’ 모집 분야는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,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‘괄호’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.

나. 직류별 시험과목

시험명	시험방법	직급	직 렬	직 류	과목수	시험과목(1·2차 시험)
제2회 임 용 시 험	경력 경쟁 임용 시험	9급	시설	일반토목	3	물리, 응용역학개론, 측량
				건 축	3	물리, 건축계획, 건축구조

## 2

##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

### 가. 시험방법

- ① 제1·2차 시험(병합실시): 선택형 필기시험(매 과목당 100점 만점, 과목별 20문제, 4지 1선택형)  
 ※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·적성검사를 실시하며, 일정 등 세부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.
- ② 서류전형: 응시자격, 가산점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
- ③ 제3차 시험: 면접시험  
 ※ 전(前)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 
 ※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.  
 ※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로 자격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.

### 나. 시험 시간

시험명	시험 방법	직급	직 렬	직 류	과목수	시 험 시 간
제2회 임 용 시 험	경력경쟁 임용시험	9급	시설	일반토목	3	10:00 ~ 11:00(60분)
				건 축	3	

## 3

## 시험문제의 출제

- 도(道) 자체출제(직류별 3과목): 문제 비공개(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)

## 4

## 응시자격

- 가. 응시 결격사유 등(기준일: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, 추가합격자 선발의 경우에도 해당 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로 합니다.)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

1.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2.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.

○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○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**나. 응시연령**

○ **9급: 18세 이상**(2001. 12. 31. 이전 출생자)

**다. 성별: 제한없음**

**라. 거주지 제한**

2019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**아래의 가)항과 나)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**하여야 합니다.

가)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 최종시험일(면접시험 최종일)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**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**(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

나)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**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**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
※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.

\* 예) 1986.11.1. 이전 ‘전라남도 광주시’ 거주 사실은 현재의 ‘광주광역시’ 거주사실로 인정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※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.

**마. 응시 자격요건(자격증·면허증 등) \* 기준일: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**

시험명	직급	직 렬	직 류	제 한 사 항
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	9급	시설	일반 토목	<p>기 술 사: 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철도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토목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지질 및 지반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</p> <p>기 사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응용지질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</p> <p>산업기사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교통</p> <p>기 능 사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석공, 전산응용토목제도, 측량</p>
			건축	<p>기 술 사: 건축전기설비,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설안전, 소방</p> <p>기 능 장: 건축일반시공, 건축목재시공</p> <p>기 사: 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</p> <p>산업기사: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건축, 건축목공, 방수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</p> <p>기 능 사: 전산응용건축제도, 타일, 미장, 조적, 온수온돌, 유리시공, 비계, 건축목공, 거푸집, 금속재창호, 건축도장, 철근, 방수, 실내건축, 플라스틱창호 문화재 수리기술자(보수기술자)</p>

○ 해당 자격증(면허증)을 보유한 자 및 해당 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예정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- 자격증은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,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『지방공무원임용령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,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**바. 응시자격 요건 설명**

- 1) 자격·면허증, 거주지제한, 가산특전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,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2)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·면허증은 해당 최종시험일(면접시험 최종일)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, 최종시험일(면접시험 최종일)까지 취득이 확실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.

## 5

###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

시 험 명	응시원서 접수기간		시 험 일 정			
	기 간	방 법	구 분	시험장소 공 고 일	시 험 일	합 격 자 발 표 일
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	2019. 3. 4.(월) ~ 3. 8.(금)	인터넷 으로만 접 수	필기시험	4. 10.(수)	4. 20.(토)	5. 8.(수)
			면접시험	5. 8.(수)	5. 23.(목) ~ 24.(금)	5. 28.(화)

※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.

※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·적성 검사를 실시하며 인·적성 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.(인·적성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에 반영됨)

※ 시험장소 공고,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「시험정보」(<http://namdo.jeonnam.go.kr/sihum>)에 공고합니다.

## 6

### 응시원서 접수방법(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)

#### 가.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·취소기간

- 1) 접수방법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.

※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,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사항은 ☎ 1522-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2) 접수 및 취소기간(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)

시 험 명	응 시 원 서		접수·취소시간
	접 수 기 간	취 소 기 간	
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	2019. 3. 4.(월) ~ 3. 8.(금)	2019. 3. 4.(월) ~ 3. 11.(월)	09:00 ~ 21:00

※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도 가능합니다.

- 3) 응시수수료: 9급 5,000원

-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신용카드결제·계좌이체·휴대전화 결제비용)이 소요됩니다.
-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.(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,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확인 및 환불)

## 나.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

- 1) 전라남도인사위원회와 전라남도에서 **동일 날짜**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**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**,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2)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**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**합니다.
  -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접수기간 내에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.

※ 단, **가산점 등록**은 해당시험 **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 및 수정이 가능**합니다.
- 3)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  - 사진파일(JPG) 규격: 3.5cm × 4.5cm 기준, 해상도 100DPI이상
  -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**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(6개월 이내 촬영)** 이어야 하며, 향후 서류전형 및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- 4)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라며, 누락·착오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.
- 5) 거주지 제한, 응시자격 제한,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.
- 6) **‘도 일괄’ 모집분야**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임용예정기관 선택이 없습니다.

## 7

## 가 산 특 전

### 가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)

- 1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**취업지원대상자**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**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**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**10% 또는 5%를 가산**합니다.
- 2)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**선발단위(직급/직류/임용예정기관)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**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3)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  - 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,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### 나. 의사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)

- 1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**5% 또는 3%를 가산**합니다.

2) 단,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**선발단위(직급/직류/선발예정기관)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**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3)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
※ 의사상자 등록여부,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(☎ 044-202-3258)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*다. 위의 ‘가’항과 ‘나’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.**

**라.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**

**1) 공통적용 가산점**

-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통신·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**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**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구분	직급	자격증 등급 별 가산 비율			
통신·정보처리분야	8·9급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정보보안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	1%	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	0.5%
사무관리분야	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	컴퓨터활용능력 1급	1%	워드프로세서(1급) 컴퓨터활용능력 2급	0.5%

※ 통신·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며, 워드프로세서 2급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

**마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**

1)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**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**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해당시험 **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**[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]에 **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.**(모든 임용시험의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)

※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(10% 또는 5%)과 보훈번호를 입력

※ 의사상자는 가산비율(5% 또는 3%)과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

※ 자격종류 및 가산비율, 번호(보훈번호 등)를 **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

2)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(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)



가.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중복지원, 거주지 제한 미확인, 자격미비자 응시,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나. 응시자는 시험당일 **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(주민등록번호 기재) 중 하나), 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
※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, 시험장소 공고일 이후부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다. 답안카드에는 **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**하여야 하고,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**수정 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**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)

**※ 수정테이프는 수험생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합니다.**

라.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전자통신기기(휴대폰, **스마트워치**, PMP, PDA, MP3, 무선 호출기, 이어폰 등), 전산기기(전자수첩, 전자계산기 등)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,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(前面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*※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.**

마.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,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,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,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, 연령·거주지·가점·학력·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,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**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,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,**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,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,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**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.**

바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사. **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**

- 아. **필기시험에서 과락(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)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**되며,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자. 자격증·면허증 등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을 제한합니다.
- 차. **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.**
- 카.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홈페이지/시험정보(<http://namdo.jeonnam.go.kr/sihum>)에 공고하며, **시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(☎061-286-3371~6) 또는 전라남도 홈페이지 「시험정보/질의응답」 코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**본 공고문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「시험정보(<http://namdo.jeonnam.go.kr/sihum>)」에서 볼 수 있으며,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고·안내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「시험정보」에 공지합니다.**